

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김경 의원 대표발의)

☐ 기후환경본부장 권 민입니다.

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800호

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
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
자치구 사무인 폐의약품 등

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

시의 민관협의체 구성 및 홍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

개정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는 바입니다.

☐ 다만,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주체는
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할 때
개정안 중 ‘중앙행정기관을 포함’ 부분은 삭제하고,
‘구성하도록 노력하고’라는 표현은 ‘구성할 수 있으며’로
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☐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